

Korean Tax Update

August 2017, Issue 38

[조세뉴스]

기획재정부, 2017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전문보기]

기획재정부는 지난 8.2 일 '17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8.3 ~ 8.22) 및 부처협의(8.2 ~ 8.22) 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8.29 일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13 개 법률안들은 2017년 예산안과 함께 9.1 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2017 개정세법(안) 주요 수정·추가사항

(1)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의 효력 조정 및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국기법 §81의 18 및 §81의 19)

-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의 법적 효력은 현행 유지
(당초안)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 내용 준수 → (수정안)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형법」§127(비밀누설죄) 및 §129부터 §132까지(뇌물죄)의 규정 의제

(2) 고용창출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최저한세 적용 배제(조특법 §132①)

-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부분 최저한세 적용 배제

(3)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 조정(부가법 §3의 2)

- 신탁 설정일 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이 있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체납시 수탁자에 대해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에서 삭제

(4)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 한도 조정(소득법 §165의 3①, 법인법 §121의 3①)

- 과태료 한도를 당초안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기획재정부, 2017년 세법개정안 [전문보기]

■ 2017 개정세법(안) 주요사항(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1) 법인세 최고 과세표준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법인법 §55①)

- 과세표준 2천억 초과 구간에 대하여 25%의 법인세율 신설

(2)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법인법 §56, 조특법 §100 의 35 신설)

- 투자·고용·상생협력에 더 많이 환류하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일몰종료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
- ①, ② 방식 중 선택 협용
 - ① [당기 소득 × (60 ~ 80%)* -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 20%
 - ② [당기 소득 × (10 ~ 20%)* - (임금증가+상생협력)] × 20%
- * 세부기준율은 시행령 개정시 확정
※ 당기 소득 2천억원 초과분은 제외
- 대상범위 및 가중치 조정

항목	가중치
투자 (토지 제외)	1
임금증가 (상시근로자 증가시)	1.5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	추가 0.5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	추가 1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	
배당	0
상생협력출연금	3

*근로소득 7천만원 이상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은 제외

- 적용기한 : '20.12.31.

(3)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법인법 §13)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18 귀속) 60% → ('19 귀속) 50%

(4)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법인법 §44②, §44의3③, §46②, §46의3③, §47③)

- 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피합병법인 등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80% 이상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 유지 요건 추가. 단, 다음의 경우 요건 적용 제외.
 - 회생절차 등에 따라 합병·분할함으로써 종업원의 80% 이상을 승계하지 못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등에 따라 종업원이 유지되지 못한 경우
 - 승계한 종업원을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다른 법인이 승계한 경우
-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종업원 중 합병·분할 후 3년 이내에 고용 유지된 자가 80% 미만인 경우 과세이연된 법인세를 추징.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
 - 파산, 회생절차 등에 따라 종업원이 유지되지 못한 경우
 - 승계한 종업원을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다른 법인이 승계한 경우

(5)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법인법 §21의2 신설)

-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금* 및 화해결정에 따른 지급금액 중 실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등에 따른 손해배상

(6)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폐지(법인법 §20, 법인령 §20)

- 이익잉여금을 성과배분상여금, 우리사주, 스톡옵션 등의 방식으로 처분한 경우의 손금산입 규정 삭제

(7)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분리하여 독립된 사업부문을 피출자법인에 승계 요건 폐지(법인법 §47의2)
-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주식 양도시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규정을 삭제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이중과세 해소(조특법 §38)
-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조특법 §37)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채권자의 범위를 채권금융기관에서 금융채권자*로 확대(조특법 §40, 조특법 §44, 조특령 §34, 조특령 §36, 조특령 §37 등)

*新기업구조조정 촉진법('16.3.18 제정)에 따라 도입된 개념으로 기존의 채권금융기관보다 넓은 개념 (연기금, 공제회 등 포함)

- 적격물적분할 시 감면·세액공제 승계 규정 신설(법인법 §47, 법인령 §84)

(8)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소득법 §165의3①, 법인법 §121의3①)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거짓 제출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명세서 등 제출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사항을 제출할 자료 건별로 부과

(9) 고용증대세제 신설(조특법 §29의7)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 신설
-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공제금액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상시근로자	700만원	500만원	-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1,000만원	700만원	300만원

- 근로취약계층인 장애인 등도 청년 정규직 수준으로 지원
- 대기업 1년, 중소·중견 2년*간 지원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도 세액공제 적용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 허용
- 적용기한 : '20.12.31.

(10)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축소(조특법 §10)

- 대기업 당기분 공제율을 현행 1~3%에서 0~2%로 축소

(11)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조특법 §24, §25, §25의3)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로 조정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로 조정

(12)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본사 등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계산시 과세표준에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 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만을 곱하여 계산(조특법 §62, §63의2)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조특법 §63),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60, §61),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5의8)의 적용기한을 '20.12.31. 까지 연장

(13)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 및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투자대상기업을 추가하고, 적용기한을 '20.12.31. 까지 연장 (조특법§16①, 조특령§14)
-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2.31. 까지 연장 (조특법 §14)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규정 적용기한을 '20.12.31. 까지 연장 (조특법 §117①1,2,2의2,2의3,2의4,4)
-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출자한 주식 양도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면제 (조특법 §117①4,23)

*PEF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출자비율 50% 이상)

(14)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12의3, §12의4)

- 합병·인수가액 중 현금지급비율 50% 초과 요건 삭제

(15) 기술이전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개선(조특법 §12)

- 세액감면 대상 소득인 기술이전·대여소득에서 최근 5년(당해 과세연도 포함)간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순실 금액 차감

(1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조특법 §7, §10, §127)

- 특별세액감면 일몰 연장('20.12.31.까지)
- 감면한도를 1억원 설정하되, 고용인원 감소시 감면한도 1억원에서 1인당 500만원씩 축소
-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30%→최대 40%)

*(현행) 30% → (개편) 30% + 최대10%{((신성장동력R&D비용/매출액) × 3)}

(17)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 재설계(조특법 §5)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중소·중견기업이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시 아래 공제율 적용

중소기업		중견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3	3	1	2

*중견기업은 고용 감소시 적용 배제

(18)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121의2)

- 7년형, 5년형 모두 고용기준 한도를 각각 10%p 인상하여 총감면 한도 인상(현행 : 7년형 90%, 5년형 70% → 개정 : 7년형 100%, 5년형 80%)

(19)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보완(조특법 §72)

- 매출액 100억 초과하는 대규모 조합법인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 2017 개정세법(안) 주요사항(소득세)**(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 과세표준 3~5억원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
-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

(2)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 '18.1.1 이후 양도하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중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25% 부과 (소득법 §104①, §107②)
- '21.4.1. 이후 양도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대주주 범위 확대 :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1% (코스닥시장 2%, 코넥스시장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소득령 §157④, ⑤)

(3) 파생상품 과세체계 개선(소득법 §118의2 등, 소득령 §167의9 등)

- '18.1.1 이후 양도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을 10%로 인상
- '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국내·외 파생상품의 손익을 통산하여 이익이 난 경우만 과세
- 기본공제 금액은 국내·외 합산하여 250만원

(4)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소득령 §4③)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던 현행 기준을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거소를 둔 경우로 개정

■ 2017 개정세법(안) 주요사항(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1)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를 2%에서 3%로 가산세율 상향
- 고의로 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1%에서 2%로 가산세율 상향

(2)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조특법 §106의10)

- 부가가치세 체납률 및 신용카드 매출 비중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규정한 업종(예: 유흥주점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를 통한 거래 발생시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사업자 대신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
- 신용카드사는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분기 말일의 다음달 25일까지 국세청에 납부

*결제금액(봉사료를 제외)의 4/110, 공급가액의 4%

- 적용기한 : '21.12.31. 까지 (3년간)
-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부가법 §10 등)

- 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로 규정하되,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를 위해 신탁재산을 한도로 보증적으로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 부과
-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담보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탁자가 처분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
-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등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

(4)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 하나의 거래인 경우 위장가산세(2%)와 미발급가산세(2%) 중복적용배제(부가법 §60)
- 부도·폐업 등으로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부가법 §34의2)
- 대가를 먼저 받고 공급시기가 되기 전의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및 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부가법 §17)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등 보완(부가법 §35, 부가령 §72)
 - 세관장이 결정·경정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을 제외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가. 관세법상 벌칙(과태료는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수입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1%) 부과 사유 신설
 - 가. 세관장이 결정·경정한 경우
 - 나.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 수입신고 후 5년 이내 또는 결정·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

(5)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개소법 §1②, 개소령 §2의2)

- 유연탄 과세기준·기본세율을 30원/kg에서 36원/kg으로 조정
- 저열량탄: 33원/kg, 고열량탄: 39원/kg으로 탄력세율 조정

■ **2017 개정세법(안) 주요사항(상속세 및 증여세)**

(1)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상증법 §45의3, 상증령 §34의2)

- 대기업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20%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 초과하는 경우 추가
-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삼각거래 등 일감몰아주기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
-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변경

(대기업)

세후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15%) × (주식보유비율 - 3%)

→ 세후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중견기업)

세후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40%) × (주식보유비율 - 10%)

→ 세후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소속기업은 중견·중소기업 범위 제외

(2) 상속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법 §69)

- (현행) 7% → ('18년) 5% → ('19년 이후) 3%

(3) 기업상속지원제도 개선

- 기업상속공제 요건 등 보완(상증법 §18)
 - 매출액 3천 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을 추가('19년 시행)하여 기업상속인의 기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기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
 - 기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조정

기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200 억 원
20년 이상	300 억 원
30년 이상	500 억 원

-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확대(상증법 §71)
 - 기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요건 충족시 기업상속 연부연납 허용

-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7년/15년에서 10년/20년으로 연장
- 가업 중단 등*의 경우에만 연부연납 취소하도록 연부연납 취소사유 조정
 - *사업 폐지(가업용 자산의 50% 이상 처분 포함), 가업 미종사(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포함) 등

(4)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상증법 §41의2)

- 초과배당 이익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얻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5)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인정(상증법 §60의5)

- 일정금액*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금액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 2017 개정세법(안) 주요사항(국세기본법)

(1)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시작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개정하고, 사전통지 생략 후 세무조사 착수시에 세무조사 통지서(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및 사전통지 생략사유 기재) 교부(국기법 §81의7, 국기령 §63의6)
 -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국기법 §81의4)
 - 세무조사시 장부 등의 일시 보관 보완(국기법 §81의10)
 - 세무조사시 장부 등의 일시 보관 요건으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및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서류일 경우 추가
 - 납세자 권리보호 사항 사전고지 추가
 - 납세자 요청일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반환. 단, 납세자보호위원회 승인시 1차에 한해 14일 이내 연장 가능
 - 세무조사 결과 통지 보완(국기법 §81의12, 국기령 §63의13)
 - 설명의무 : 조사공무원에게 세무조사 결과 설명의무 부여
 - 통지기한 :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소재 불분명 등으로 공시송달시 40일)
 - 통지내용 : 조사내용, 조사 대상 세목·과세기간, 결정·경정할 과세표준·세액 및 산출근거, 결정·경정이유 등
 - 세무조사 착수시 납세자보호위원회 청구사항·절차 고지(국기법 §81의2)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 금지(국기법 §81의8)

(2) 부분세무조사의 법적근거 명확화(국기법 §81의4②, §81의11)

- 부분세무조사의 사유 신설
 - ① 불복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조사
 - ② 국세환급금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처리를 위한 조사
 - ③ 거래상대방에 대한 전부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

- ④ 구체적인 탈세 제보시 해당 탈세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 ⑤ 명의위장,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등
- (제한)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부분조사는 상기 ①, ②를 제외하고 2회 이내로 실시
- 부분조사 후 부분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사는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사항에 추가

(3)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보완(국기법 §26의2)

- 경정청구·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분 포함
-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변경되는 경우 : 확정판결일부터 1년

■ 2017 개정세법(안) 주요사항(국제조세)

(1) 역외세원 관리 강화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을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인하(국조령 §49)
- 간접투자기구 외국납부세액 환급 범위를 국외원천소득의 10% 한도로 축소(법인법 §57의2)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거짓제출시 보고서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과태료 인상 (국조령 §51①)

(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25%에서 5%이상으로 과세대상 확대(소득령 §179⑪, 법인령 §132⑧)
- 내국법인이 용역 대가를 파견외국법인에 지급시 원천징수세율을 17%에서 19%로 인상
-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요건중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계액을 현행 30억원 초과에서 20억원 초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
- 선박건조업, 금융업 추가하여 원천징수 의무자 범위를 확대함(소득법 §156의7①, 소득령 §207의10①)

(3)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신설(국조법 §16의4 신설)
- 다국적기업 이자비용 손비인정 제한 제도 도입(국조법 §16의2, §16의3 신설)

(4)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 사전조정제도 개선(국조법§6의3, 국조령§14의7, 관세법§37의2, 관세령§31의4)
 -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산출방법이 다른 경우도 국세 정상가격·관세 과세가격간 사전 조정제도 신청 허용
 - 사전조정을 위한 국세청·관세청간 실무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사후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국조법 §10의2, 관세법 §38의4)

(5)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범위 확대(국조법 §13①)

-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한 경우 이전가격세제 적용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사유로 추가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문보기]

행정안전부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지원 등을 반영한 지방세관계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외수입금징수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함.

■ 2017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 주요사항

(1) 창업 벤처·중소기업 감면 확대(지특법 제58조의 3)

-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 재산세 감면 비율 확대(5년간 50% 감면 →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 50% 감면)

(2) 사내벤처 분사창업에 대한 감면 신설(지특법 58조의 3)

- 사내벤처가 분사창업(기업 내 일부 사업부서를 임직원에게 이전해 모기업과 다른 독립된 법인형태로 창업)시 창업 벤처·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취득세 75%, 3년간 재산세 100%(이후 2년간 50%), 등록면허세 100% 감면

(3) 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대상 확대(지특법 제46조)

- 기간에 관계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 재산세 감면

(4)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설 (지특법 제47조의2)

-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15%~20% 감면 신설
- '18.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3년간 적용

(5)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지특법 제60조)

- 창업지원기관(창업보육센터 등) 지방세 감면* 3년간 연장

*창업보육센터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 등

(6)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지특법 제58조)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입주기업이 신·증축하는 산업용건축물·연구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간을 3년간 연장

*취득세 50%, 재산세 3년간 50% 감면

(7)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조기결정 신청대상 확대(지방세기본법 제88조)

- 과세예고된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조기에 부과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문 보완

(8) 소액 불복청구에 대한 심의절차 간소화(지방세기본법 제96조)

- 청구금액이 1백만원 이하로서 납세자 주장대로 심의결정된 사례가 있거나 단순사실 관계인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생략

- '18.1.1. 불복이 청구되는 분부터 적용

(9)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지방세기본법 제80조 등)

-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시작일 10일전에서 15일전으로 연장

(10) 재산세 분할납부기한 조정(지방세법 제118조)

- 분할납부기한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조정

(11)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완화(지방세법 제103조의28)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청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아 환급되었다면, 지방소득세도 소급공제를 통한 환급 가능

구분기준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현행	개정안
직전연도	기한내 세무서 신고	기한에 관계없이 지자체 신고·부과	기한에 관계없이 지자체 신고·부과
당해연도	기한내 세무서 신고 및 환급신청	기한내 지자체 신고	기한에 관계없이 지자체 신고

(12)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 신설(지방세기본법 제62조)

- 분식회계 법인의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 일이 지난 날로 함

(13) 대기오염 배출시설 주민세(재산분) 종과(지방세법 제81조)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를 주민세(재산분) 종과대상에 추가

(14) 지방소득세 납세지 기준 명확화(지방세법 제89조)

- 법인의 지방소득세 납세지 : (현행)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 (개정)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 개인의 지방소득세 납세지 : (현행) 주소지·거소지 → (개정) 소득세 신고당시 주소지·거소지

(15) 안분신고 의무 강화 및 일괄 경정청구 명확화(지방세법 제103조의24)

- 납세지 등 오류 법인이 당초 신고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신고할 경우는 「지방세기본법」 제51 조의 '기한후 신고'로 규정
- 안분대상 법인의 과세표준 경정에 따른 수정신고 시에도 정확한 안분 신고 유도를 위해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가산세 부과 규정 추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지자체에 일괄 경정청구토록 규정 명확화

(16) 법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 규정 추가(지방세법 제103조의23)

- 확정신고 세액 계산시 공제대상 금액에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을 포함

(17) 분식회계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제재 강화(지방세법 제103조의25 등)

- 분식회계로 인한 과다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제재를 국세와 동일하게 개정

구분기준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현행	개정안
환급제재 방식	과다납부 세액의 20%를 한도로 매년 공제	5년간 납부세액에서 공제	과다납부 세액의 20%를 한도로 매년 공제
환급금	없음	공제 후 남은 금액	없음
환급가산금	없음	없음	없음

(18) 비영업용 경형 승용자동차 감면 개선(지특법 제67조)

- 경형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여 감면 받은 후, 1년 내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 시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개정

(19)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지방세법 제103조의20)

- 과표 2천억 초과 구간 법인지방소득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

(20)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지방세법 제92조)

- 과세표준 3~5 억원 구간에 적용되는 개인지방소득세율을 3.8%에서 4%로 인상
- 과세표준 5 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개인지방소득세율을 4%에서 4.2%로 인상

(21) 대주주 양도소득 세율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지방세법 제103조의3)

- '18.1.1 이후 양도하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3 억원 이하분은 2%, 3 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2.5% 부과

(22)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21, 제103조의31)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 조의 35(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따라 내국법인(연결법인을 포함한다)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보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취득 당시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1 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신설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 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을 한 경우와 현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국세청,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전문보기]

국세청은 8.9.(수)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 를 착수하였음.

- 조사대상자는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에서 탈루 혐의가 높은 다운 계약을 이용한 양도세 탈루, 주택 취득자금 편법증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자 등 총 286 명임. 이들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 실시할 예정임.
-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체 정보수집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 등을 통해, 다운 계약·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세무관리해 나갈 것임.

[예규·판례]

[판례 1]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보는 것이 아님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 두 38812 판결

-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 1355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 조의 2 제 2 항 등이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 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 두 2825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납세의무 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 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 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님

[판례 2] 공익법인이 부동산을 출연받은 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 부과시,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기준일은 '공익법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이 아닌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임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 두 50696 판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공익법인 등이 그 재산을 출연받은 시점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리고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은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각 호에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증여세 과세대상은 공익법인 등이 당초 출연받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증여로 의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법문상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이후에 위 규정이 정한 과세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증여로 의제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함. 이러한 해석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도 부합함.

[심판례 1] 법인세 신고기한의 연장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기한연장의 승인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연장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조심 2016 지 1186, 2017. 8. 9.

- 법인소득세는 독립된 세목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세인 법인세와는 부과 주체와 절차, 과세요건 등이 다른 별개의 조세이므로, 청구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신고기한의 연장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기한연장의 승인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전자가 연장된 경우라 하여도 후자까지 연장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가산세 부과대상임. 한편, 기한 내에 법인의 본점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점사업장의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한 이후 납세지의 오류를 확인하여 처분청이 부과하기 전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는 납세지 오류에 따른 수정신고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

[심판례 2] 합병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1 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 2 항의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 2017 지 0530, 2017. 8. 9.

- "합병"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 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각·증여를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례 3] 「지방공기업법」 제 49 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임

조심 2016 지 0092, 2017. 8. 3.

- 이 건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로서 지방공사인 청구법인이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고, 지방공사가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원인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토지의 현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의 사업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

[심판례 4] 구매약정물량과 실제 구매량과의 차이로 발생하는 매입처 재고량의 증·감량 및 단가 상승·하락분 정산액(원료비 보정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조심 2016 구 3857, 2017. 7. 26.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계 있는 가액 곧 그 대가인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LPG 거래구조를 보면 불가피하게 물량의 수급불균형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점, 이에 거래당사자가 당월의 LPG 대금에 원료비 보정액을 포함한 금액을 대가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점, 매매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사전에 통보한 물량보다 적게 구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초과 구매하는 경우에도 원료비 보정액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정액은 양 당사자가 거래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산한 가격조정분으로서 LPG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대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심판례 5]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수령하여 해당 사업의 인건비로 사용한 고용지원금은 조특법 제 85 조의 6 제 1 항의 법인세 감면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 2017 중 2515, 2017. 7. 26.

-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 등을 함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아닌 업체와 달리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할 것이고, 동 소득은 매출이나 수입에서 매입이나 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해당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동 국고보조금은 납세자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수령한 쟁점고용지원금을 해당 사업(블라인드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사용된 것에 다툼이 없는 이상 쟁점고용지원금은 조특법 제 85 조의 6 제 1 항의 법인세 감면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례 6]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금액에서 판매촉진비를 공제할 수 없음

조심 2017 부 2672, 2017. 7. 21.

- 법인세법 제 55 조의 2 제 1 항 및 제 6 항의 '장부가액'이란 회계상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가액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 자산 평가증 등을 가산하고 감가상각, 평가손실 등을 차감한 당해 자산의 장부상 대차잔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매촉진비와 같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일반적으로 자산과 관련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에는 어려워 이를 장부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금액에서 판매촉진비를 공제할 수 없음.

[심판례 7] 청구법인이 합병을 통해 업종변경을 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33 조의 2에서 규정하는 사업전환에 포함됨

조심 2016 중 4368, 2017. 7. 12.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33 조의 2에서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는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에서 중소기업이 합병을 통하여 사업전환을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합병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으므로 합병을 통한 사업전환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33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사업전환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움.

[예규 1] 감자에 따른 이익의 전체 금액은 기준금액 이상이나 수증자별 이익의 금액은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과세대상은 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함

재재산-476, 2017. 8. 1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9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인지 여부는 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예규 2]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 3 국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인도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인도법인이 지급받는 동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317, 2017.07.27

-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 3 국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인도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인도법인이 지급받는 동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한·인도 조세조약」제 12 조 및 「법인세법」제 93 조제 6 호(2016.12.20.법률 14386 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예규 3] 제약사가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부과 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법인-1077, 2017. 7. 27

- 제약사가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부과 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예규 4]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 32 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416, 2017. 7. 25

- 도서판매업자가 이동통신 사업자와의 "멤버십 제휴 계약"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여 멤버십 포인트를 부여받은 회원에게 도서를 공급하면서 판매금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할인 금액의 일부를 보전받는 경우 도서판매업자는 도서판매금액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한 후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을 더 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 121 조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발급

하는 것이며,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 32 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예규 5] 전기 및 난방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경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배출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444, 2017. 7. 25

- 전기 및 난방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경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3 호의 배출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 4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1 조의 규정에 의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예규 6]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기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부가-371, 2017. 7. 24

-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80 조 제 2 호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기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예규 7]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그 감면을 승계받을 수 없음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366, 2017.07.13

- 「조세특례제한법」 제 63 조의 2 에 따른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을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 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 47 조 (2010.12.30. 법률 제 10423 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

© 2017 Samjong KPMG.,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